

계룡시보건소진료비및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안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(지)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수수료 징수와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진료비)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 및 진료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중 본인부담액을 징수한다.

제3조 (진료수가) 진료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수가기준액을 적용한다. 다만,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.

제4조 (기타수가) ①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보철, 보조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구급차량등 시설사용료는 별도 정하여 징수할수 있다.

②치면열구전색, 불소겔도포, 치석제거(스케링) 등의 수가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.

구 분	수 가	근 거
치아홈메우기(치면열구전색)	치아갯수당 방문당 일반진료 수가	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
불 소 겔 도 포	방문당 일반진료 수가	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
치 석 제 거(스케링)	방문당 일반진료 수가 ×약당	국민건강요양급여기준

③유료로 하는 예방접종비용은 의약품 구입가격과 재료비 구입가격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

제5조 (증명수수료 등) ①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.

②제1항의 증명발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하되 제증명발급에 따른 가산금산정기준 및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.

제6조 (진료비 및 수수료감면) ①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②보건소장은 65세이상 계룡시거주자 노인과 장애인증서 소지자,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징수를 면제하거나,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 본인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(지원)할 수 있다.

제7조 (납부) 진료비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하며
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. 단 금융기관의 휴일시에는
그 익일 납부할 수 있다.

제8조 (추징)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수가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 받은 자
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.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제증명발급 수수료 요율표

구 분	기 준	수수료(원)	비 고
1. 근로자 및 일반건강진단서	1통	500	
2. 채용신체검사서	1통	500	
3. 일반진단서	1통	500	
4. 특별진단서	1통	2,000	요양신청용, 병사용
5. 사체검안서	1통	5,000	
6. 성별및연령감정서	1통	2,000	
7.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	1통	2,900	X-선, B형간염검사포함 (항체 양성으로 기 판명된자는 1,500원)
8. 사망진단서	1통	500	
9. 기발급증명서추가발급	1통	300	
10. 1통초과발급	1통	100	
11. 운전면허신체(적성)검사서	1통	500	
12. 장애인증명서	1통	2,000	
13. 총포,중기,운전면허신체 (적성)검사서	1통	500	

[별표 2]

제증명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

1. 제증명 발급에 따른 가산금 산정기준

- 가. 진료목적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, 검사, 방사선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하고,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한하여 실시한다.
- 나. 수가적용은 “국민건강보험요양기준 및 진료수가기준”에 의하여 진찰 및 검사항목별로 산정·징수하되 진찰료(기본진료)는 보건기관 방문당 수가를 징수한다.
- 다. 의사의 진찰결과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게 되는 각종검사 및 방사선진단등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관계없이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 (본인부담액)만을 징수한다.
- 라. 진료의뢰서 및 진찰권은 별도 징수하지 아니한다.
- 마.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는 보건기관 방문당 수가를 징수한다.
- 바.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법령에 검사 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.

2.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

구 분	검 사 항 목	검 사 구 분	비 고(수가적용)
1. 근로자건강진단	기왕력, 자각증상, 타각증상, 문진등	기본진료(진찰)	
	노검사(노단백, 뇨당)	검 사	나-1
	빈혈	"	나-102
	혈청 G.O.T	"	나-257
	혈청 G.P.T	"	나-258
	혈청매독검사	"	나-460
	콜레스테롤	"	나-241
	방사선촬영료	방사선진단	다-121
2. 채용신체검사	혈압, 신장, 체중, 흉위, 시력, 색신, 기왕력등	기본진료(진찰)	
	노검사(노단백, 뇨당)	검 사	나-1
	빈혈	"	나-102
	혈청 G.O.T	"	나-257
	혈청 G.P.T	"	나-258
	혈청매독검사	"	나-460
	콜레스테롤	"	나-241
	혈액형검사	"	나-201
3. 일반진단	방사선촬영료	방사선진단	다-121
	관계법령에 의함	기본진료	